

의안번호	2210428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5. 6. 30.
추 계 번호	25F281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 시, 지방세는 2026년 352.4억원, 2030년 352.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,762억원(연평균 352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○ 개정안에 감면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감면실적을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 (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)	-352.4	-352.4	-352.4	-352.4	-352.4	-1,762.0	-352.4
－ 취득세	-311.2	-311.2	-311.2	-311.2	-311.2	-1,555.9	-311.2
－ 재산세	-41.2	-41.2	-41.2	-41.2	-41.2	-206.1	-41.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○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 － 감면율: (현행) 취득세 50%, 재산세 75% (개정안) 취득세 및 재산세 100%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(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감면의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
 - 감면 적용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감면실적을 추계
-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실적은 최근 4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(취득세) 최근 4년간 연평균 감면실적: 311.2억원 (감면율 100% 환산액)
 - (재산세) 최근 4년간 연평균 감면실적: 39.7억원 (감면율 100% 환산액)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 개요)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- 취득세 감면율: 50% 감면
 - 재산세 감면율: 75% 감면
 - 2021.12.31.일 이전 100% 감면, 2022.1.1.~2022.12.31. 50% 감면, 2023.1.1.이후 75% 감면

[표 2]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

	감면율	
	취득세	재산세
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·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	50%	75% (~2021.12.31.) 100% (~2022.12.31.) 50%

주: ()는 2020년 이후 감면율 변화

□ (추계방법)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추계

- (취득세) 개정안의 감면율인 100%로 환산한 최근 4년간(2021~2024년) 연평균 감면실적(311.2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- (재산세) 개정안의 감면율인 100%로 환산한 최근 4년간(2021~2024년) 연평균 감면실적(39.7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
[표 3]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: 2021~2024년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1	2022	2023	2024
취득세 감면실적	209.9	112.1	147.4	152.9
취득세 감면율 100% 환산액	419.8	224.2	294.8	305.8
재산세 감면실적	46.1 (감면율: 100%)	13.9 (감면율: 50%)	34.6 (감면율: 75%)	29.1
재산세 감면율 100% 환산액	46.1	27.7	46.1	38.8

자료: 한국농어촌공사 제공자료

(2) 추계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확대 시, 지방세는 2026년 352.4억원, 2030년 352.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,762억원(연평균 352.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- 개정안에 감면 적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감면실적을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30년, 취득세 및 재산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 (안 제13조 제2항 제1의2호)	-352.4	-352.4	-352.4	-352.4	-352.4	-1,762.0	-352.4
－ 취득세	-311.2	-311.2	-311.2	-311.2	-311.2	-1,555.9	-311.2
－ 재산세	-41.2	-41.2	-41.2	-41.2	-41.2	-206.1	-41.2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